



재해 개요

- 2019. 3. 5(화) 강원도 원주시 소재 ○○건설 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○○○○건설 소속 작업자가 항타기 상부 굴진기 컨트롤박스의 전원케이블을 해체하던 중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드럼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 작업 시 안전조치 미 실시
 - 차량계 건설기계(항타기) 부속장치의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나 미 실시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접촉방지 조치 미 실시
 - 차량계 건설기계(항타기)를 사용하여 파일작업 등의 작업 시 차량에 접촉되어 작업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작업자가 위험작업 반경 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 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철저
 - 차량계 건설기계(항타기 등)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접촉방지 조치 철저
 - 차량계 건설기계(항타기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접촉되어 작업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작업자가 위험작업반경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